



朴光勳 수산청장

▲ 박광훈 수산정장원 1 월 3일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중앙부처 시무식에 참석, 6일에는 수산인 시민교례회에 참석, 11일 수산관계관회의를 주재。 18일에는 수산제도개혁특별자문위원회를 개최, 19일에는 수산정책협의회를 주재, 24일에는 전국

배이어 청와대 신년하례식에 참석, 6일에는 이달의 새어민상을 시상, 9일에는 부서장 도지회 장 연선회의를 주재, 23

▲ 최성우 남화도구주식회
사회장은 1월 4일 광
주 삼당회의소 신년교례회
에 참석. 12일에는 대한
체육회가 맹경기단체장 간

▲ 양성후 세기건설식회
사회장은 1월 6일 민족통일총연합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총무과장 김하섭 △감사
△법무관 이용숙 △기획예산
△법무관 이선준 △행정관리
△법무관 정영재 △협력조합

전무이사를
부사장이
승진
발령했다.

로
한
족

▲ 배평암씨 (주산정 생
국장)
▲ 선병길씨 (수산정 동
어항사부소)

建設관련 行政업무 어떻게 바뀌었나

財經院·建交部課別 관장업무要覽

연구 발전 △수자원 관리 사업계획의 총괄 조정 △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개축·보수에 대한 장·단 기 사업계획의 수립 조정 △하천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해외건설과 △해외건설 수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 발전 △건설경제에 관한 연구 구 발전 △건설용 기자재 수급 계획의 수립 및 동향 분석	△건설산업 정책의 입안 및 연구 △건설경제에 관한 연구 △건설용 기자재 수급 계획의 수립 및 동향 분석
해외건설과 △해외건설 수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 발전 △해외건설 협력 및 진출 대책 조정 1과 △장·단기 교 통기본계획의 수립 △수 송수요의 예측 및 수송총 합계획의 수립 조정	△해외건설 수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 발전 △해외건설 협력 및 진출 대책 조정 1과 △장·단기 교 통기본계획의 수립 △수 송수요의 예측 및 수송총 합계획의 수립 조정
도로정책과 △도로종합 개발정책의 입안 및 연구 발전 △도로사업의 예산 관리에 관한 사항 △유 료도로의 설치·허가 및 운 영 관리	△교통부문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분야 별 투자계획의 조정 △교 통부문 주요 투자사업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 교통부문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 정

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시행	△도로건설과 관련한 보조 및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의 연구	△도로상의 재해대책 수립 시행 및 지원
장·단기계획의 수립 조정	△도로의 유지관리 시장
건설·교통부문계획의 수립 조정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총괄
및 연구 발전 △주택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발전 △주택의 건설 관리 및 임대주택 육성	△수도권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수도권기반계획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조정
부여 주택관리과	△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발전 △주택공모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발전 △임대주택의 건설 관리 및 임대주택 육성
건설기계과	△건설기계와 기계화 수립 조정 △건설설비 사기계화시공에 관한 청사 수립 및 지원

<p>기타부서</p> <p>국제협력과 물류정책과 물류시설과 화물운송과 과 육상교통기획과 교통 영향평가과 안전정책과 도시전철과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기 술과 항공정책과 항공정책과</p>
<p>재정경제원</p> <p>예산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과 관리도구 는 일부의 총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심의 관계자료의 작성 및 협의 △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정책과 △예산과 관련된 경제·재정정책에 조정 △종장기 재정계획 의 종합 조정 △예산편성과 관련된 세입 △예산수립 용의 경기조절대책 수립 재정계획과 △지역발달과 관련된 예산제도의 연구 개발 및 조정 △지역개발과 관련된 예산조정 믹 종합 △국가예산과 관련된 지방재정의 조사 연구 △지방재정교부금·예산수립과 그 집행 관리 예산기준과 △행정기기관과 국가공무원 정원 증감에 따른 예산협의 △예산과 관련된 보수·설자 예산제도과 △공공기구의 제도연구 및 종합관리 △총사업비 관리방안 수립 △출연기관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의 관리 조세정책과 △조세정책과</p>

기술위주로 낙찰자결정

P.Q 97년에 개비 이와 함께 물적보증 강화되면서 인적보증에 필요하지 않게됨에 해당공사에 대한 시공 대보증인제도는 자연스 게 폐지되게 된다.

방대상공사로 확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제입찰에 의하도록 하는 국정 협정을 통하여 이같은 내용을 주요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 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여 자신의 국적이나 물품의 산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수 없도록 했다.

국내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법과 공사종류에 따라 다기화되는 법률을 표준화하는 건설기본법(가칭) 제정추진키로 추진중이다. 건설교통부 체에 도입한 노역·공제·합의무출자 등을 협행 설립면허제도에 적용가능한 점을 감안, 외국건설업체에 대한 진출을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기본법 제정추진키로

건설교통부
국내건설시
개방에 대비하
고 국제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법을 개정하
기 공사업법과
공사종류에 따라
다기획화되는
법률을 표준화
할 건설기본법
(가칭) 제정
추진중이다.

